

[동종업 타사 중대재해 발생알림]

시티건설 중부내륙고속도로 12공구 굴착기 협착 件

안전기획팀  
'23.05.30. 13:30

□ 시공사 : (주)시티건설 (2022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57위)

□ 현장개요

- 현 장 명 : 중부내륙고속도로 12공구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인주면 일원)
- 공사규모 : 연장 8.48km(왕복 4~6차로)/ 교량 16개소(1.2km)
- 공사기간 : 2019.12. ~ 2024.12

□ 재해내용

'23.05.29(월) 15시35분경 신호수(토공반장)가 작업방향 반대로 이동중인 굴착기를 전면에서 제지하던 중 넘어지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운전원이 굴착기를 운행하여 무한궤도에 협착된 재해

□ 재해사진



□ 피해상황

- ▷ 인적피해 : 1명 사망
- ▷ 물적피해 :

□ 사고원인 추정

- ▷ 신호수의 부적합한 위치 및 굴착기 운전원의 주시 태만
- ▷ 고용노동부 및 경찰 조사 진행중

□ 당사 현장 조치사항

- ▷ 재해사례 전파
- ▷ 신호/유도원은 건설기계 진행방향의 좌/우 측면에서 신호/유도 업무 수행
- ▷ 신호/유도원은 무전기 등을 지급하여 건설기계 운전원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며 건강상태가 양호한 인원을 배치
-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계획을 수립 후 신호/유도원 및 운전원 등 관련 작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 [신호/유도원은 역할 및 위치에 대한 교육 수료 인원을 비치]
-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은 상기 재해 사례를 반영한 위험성평가 대책 수립 후 현장 점검 시행

## ■ 언론 보도자료(뉴스핌 외)

# [종합] 시티건설 공사장에서 근로자 1명 깔림사...고용부,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기사입력 : 2023년05월30일 11:04 | 최종수정 : 2023년05월30일 11:05



가+

가-

프린트

지난 29일 굴착기에 하반신 깔려 사망  
공사 50억 이상...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시티건설 공사장에서 근로자 1명이 깔림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시티건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29일) 오후 3시 35분경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시티건설의 서부내륙고속도로 12공구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 A씨(1963년생)가 깔림 사고로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작업 방향 반대로 이동 중인 굴착기를 제지하다가 넘어졌다. 굴착기 운전수가 이를 보지 못한 바람에 A씨는 하반신이 깔려 숨졌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시티건설 작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전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천안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